

보도설명자료

('20. 11. 6.)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시중에 유통되는 면과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공산품 마스크 다수에서 인체에 유해한 형광물질(형광증백제)이 검출된 바, 공산품 마스크에 형광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형광증백제 관련 규정 자체도 없음(11.05, MBC 뉴스 기사에 대한 설명)

- ◇ 면마스크 등 공산품 마스크에서 검출된 형광물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인된 바 없고,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형광현상이 어떤 물질에 의해 유발되며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 ◇ 11월 5일 MBC 뉴스에 보도된 「일부 마스크 ‘형광물질’...면마스크는 기준도 없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비말차단) 13종을 검사한 결과, 의약외품 3종에서 형광물질 검출되었으며, 공산품 마스크는 15종 중 8개에서 검출됨
- 형광물질이 나오더라도 형광물질 전이성 시험에서 적합한 경우 유통할 수 있으나, 전이성 시험은 피부질환을 일으키는지를 따지는 것이어서 형광물질이 호흡기 등을 통해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남아있고 장기간 노출 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음
- 공산품 마스크에 형광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형광증백제 관련 규정 자체도 없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공산품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유해물질(포름알데하이드, 아릴아민, pH)을 규제하고 있으며, 추가로 위해성이 확인된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및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 2종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예비안전기준을 제정(12월 11일 시행계획) 하는 등 공산품 마스크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면마스크 등 공산품 마스크에서 검출된 형광물질과 관련하여 현재 까지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인된 바 없고,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형광현상이 어떤 물질에 의해 유발되며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향후, 공산품 마스크에 잔류한 형광물질의 종류 및 위해성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필요시 안전기준 개정 등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약처 입장〉

- 식약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형광증백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광증백제가 없음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형광증백제 : 디아미노스틸렌술폰산 유도체와 같이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스크를 하얗게 보이도록 사용하는 물질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형광증백제 시험은 형광증백제를 제품에 불법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자외선 조사를 통해 형광이 나타나는 부분을 선별하여 검체로 채취하고, 형광이 나타나는 검체는 전이성 형광증백제 시험법으로 시험하여 최종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이성 형광증백제 시험’은 형광물질이 피부로 전이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형광을 발현하는 물질*이 있어,

- 자외선 조사만으로는 제품에 형광증백제 사용 여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마스크중 형광증백제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 아울러, 마스크 중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경우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 마스크의 부직포 등의 재료가 되는 나무(펄프) 종류 중 백광 등과 같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자외선 조사 시 형광을 나타낼 수 있음

○ 따라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자외선 조사 시 형광을 나타내었으나, 전이성 형광증백제 시험법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러므로, 형광증백제 시험에 적합하였다면 형광증백제로 인한 피부, 호흡기 등의 인체 영향은 없습니다.

○ 참고로, 금번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의약외품 마스크에서는 형광증백제 시험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마스크를 공급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박용민 과장 (043-870-5450), 유경희 연구관(541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장정운 과장(043-719-3601), 김지연 연구관(360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 손경훈 과장(043-719-4851), 이이다 연구관(4852/01)